



2018년 제1차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회의 결과보고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8년 제1차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2018년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및 예산(안), 2018년도 실무분과 민과협력 공동사업 검토, 운영세칙 개정(안) 검토를 위한 『2018년 제1차 실무협의체 회의』결과 보고임.

개 요

- 일 시 : 2018. 02. 19.(월), 14:00
- 장 소 : 시청 소회의실(본관 지하1층)
- 참석인원 : 총 29명
 - ▶ 실무협의체 위원 : **35명중 28명 참석(80.0%)**
 - 참석위원 : 28명(민 15명, 공 13명)
황재경, 박세준, 김윤희, 권미영, 김금순, 김민정, 박근중, 송명은, 오민수, 이영설, 장선경, 전상원, 조여옥, 주경희, 최정화, 황의숙, 김상길, 김수정, 김인배, 김일기, 신철승, 이명식, 이운순, 남동학, 전교영, 이동현, 최승래, 홍명숙. 이상
 - 미참석위원 : 7명(민 3명, 공 4명)
이성호, 장미선, 장민자, 정육환, 오영석, 유혜숙, 이소희. 이상
 - ▶ 복지여성국 복지허브화추진단 : 김남화
 - ▶ 협의체사무국 : 박창재, 임복희, 허윤범, 이주미, 김기강

주요내용

1. 보고사항

- 2017년 운영 실적 및 결산 보고
- 2018년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위원변동 사항 등

2. 실무분과 운영사항 공유

- 2017년 우수활동 실무분과 선정 결과 및 2018년 선정 기준(안)

3. 안건토의

-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평가(안)
- 2018년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 및 예산(안)
- 2018년도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검토
- 운영세칙 개정(안)_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감사 선임 관련

회의결과

I. 보고사항

① 2017년 운영 실적 및 결산 보고

- 의견 없음

② 2018년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의견 없음

③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의견 없음

④ 위원변동사항

- 실무협의체 : 4명(인사발령 등)
- 실무분과 : 위촉 13명, 해촉 16명(기관 인사이동 등)

II. 실무분과 운영

① 2017년 우수 활동 실무분과 선정 결과

○ 주요내용

- 선정방법 : 정량지표 평가(사무국) ⇒ 정성평가(임원회의)
- 선정지표

지 표		방법
회의참석(15점)	회의참석률 (10점)	정량
	실무협의체 참석률 (5점)	정량
네트워크(10점)	민관협력도 (5점)	정량
	전체행사 참여율 (5점)	정량
민관협력 공동사업(20점)	효과성 평가 (10점)	정량
	운영과정 평가 (5점)	정성
	주민복지기여도 (5점)	정성
가산지표(3점)	자문위원제운영 (2점)	정량
	분과활성화 도모 (1점)	

- 우수분과 인센티브 : 3개 분과 정책 벤치마킹 비용 등 지원
- 선정결과 : 영유아분과, 아동분과, 여성가족분과

○ 논의내용 : 원안대로 동의

② 2018년 우수 활동 실무분과 선정 기준(안)

○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18년 1월 ~ 12월, 선정시점 : 2019년 1차 임원회의
- 전년 대비 선정 지표 변경 내용
 - 제7기 실무분과 구성시 새롭게 실무분과가 구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향상률(5점) 지표 제외

○ 논의내용 : 원안대로 동의

III. 안건토의

1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평가(안)

○ 회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

○ 주요내용

- 추진사업 : 5대 분야별 추진전략, 11대 중점추진사업, 74개 세부사업

〈단위 : 개/천원〉

구 분	2017년 최종 심의계획 (A)	2017년 실적(B)	증감(B-A)	달성률 (B/A*100)
사업건수	74	74	0	100%
사업예산	76,411,045	77,681,583	1,270,538	101.7%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항목별 배점)	평가점수	
			평가결과	소계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의 충실성 (25점)	•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4	25
	• 계획수립의 합리성	7	7	
	• 지역사업 선정의 객관성	8	8	
	• 행·재정 지원 계획의 충실성	6	6	
시행과정의 적정성 (25점)	•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의 적정성	4	4	25
	• 시행결과 평가체계 구성·운영의 적정성	4	4	
	•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	4	4	
	• 사업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	7	7	
	•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	6	6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30점)	• 성과목표치(목표수준) 설정의 적정성	5	5	26
	• 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도	6	4	
	•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5	3	
	• 지역사업 성과의 우수성	8	8	
	• 행·재정 계획 대비 이행 정도	6	6	
지역주민의 참여도 (20점)	• 계획수립·평가과정의 지역주민 참여도	7	7	20
	• 계획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노력 및 반영 정도	7	7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도	6	6	
		100	96	96

○ 논의내용 :

이 름	내 용
김윤희 (수원YWCA 요양원 관장)	○ 당초예산이 늘어난 상황이고 달성률도 101%인데 초과달성을 한건데 시행결과 목표 달성도에 계획대비 예산집행률이 왜 점수가 깎였는가. 예산은 달성했는데 몇몇 사업들은 달성도가 낮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박창재 (사무국장)	○ 전체 사업중에서 미달된 사업이 있음. 예산 집행은 86개만 100프로 달성된거고 나머지가 85프로 미만으로 달성된거라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보임
김윤희 (수원YWCA 요양원 관장)	○ 데이터만 봐서는 사업간 달성도에 격차가 있다고 보여짐. 모든 사업들이 골고루 잘 진행될수 있어야 할 것임.
박창재 (사무국장)	○ 대부분의 미달사업들이 지방분권(예산조정)과 관련하여 예산확보를 못한 사람들이 있었음.

㉒ 2018년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및 예산(안)

○ 회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

○ 주요내용

I **민관협력거버넌스강화** [Governance]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점검·평가
-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 대표·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임원 회의

II **시민참여활성화** [Citizen]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
-특화사업 컨설팅, 핵심리더교육, 워크숍 등
- Community/Network 지원
-홍보지원, 성과보고대회
- 지역복지정책 공명(共鳴) 휴먼복지포럼

III **협의체역량강화** [Empowerment]

- 교육사업 '지역복지 The core, Training'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평가- 경영평가, 자체평가
- 조직강화 -워크숍, 성과보고대회
- 국외 선진복지국가 벤치마킹

IV **지역사회연대강화** [Solidarity]

- 지역사회복지정책 조사연구
-지역사회보장조사, 종사자처우개선연구 등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 운영
- 지역사회보장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
- 홍보사업 -뉴스레터, 홈페이지 운영 등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2018예산 (A)	2017예산 (B)	증 감 (A-B)	관	항	2018예산 (A)	2017예산 (B)	증 감 (A-B)
총 계		573,681	836,137	△262,456	총 계		573,681	836,137	△262,456
보조금 수입	소계	558,022	816,188	△258,166	사무비	소계	325,022	307,068	17,954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25,022	307,068	17,954		인건비	269,464	252,759	16,705
	사회복지 사업보조	179,000	119,500	59,500		업무 추진비	18,000	16,700	1,300
	기타 사업보조	54,000	376,620	△322,620		운영비	37,558	37,609	△51
	민간자본 사업보조	0	13,000	△13,000	재산 조성비	자산 취득비	0	13,000	△13,000
자부담	자부담	3,245	0	3,245	사업비	소계	248,659	516,069	△267,410
이월금	이월금	12,414	19,949	△7,535		일반 사업비	182,245	119,500	62,745
						기타 사업비	66,414	396,569	△330,155

○ 논의내용 :

이 름	내 용
김상길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 전년도 사업하고 올해 바뀐 것이 있나
박창재 (사무국장)	○ 사업은 크게 변화가 없음. 단 4기 보장계획 관련 증편된 부분과 조사 연구사업에서 지역사회 욕구 및 자원조사가 증편되어 구성되었음.
김상길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예산을 바꿔게 되는데 문제가 없다. 벤치마킹에 참여는 안해봤지만 내용상을 보면 외국의 시스템을 잘 봤을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굳이 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 않나
박창재 (사무국장)	○ 국내 벤치마킹의 경우 분과 활동으로 구성하여 하고 있음. 국외벤치마킹의 경우 종사자처우개선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황재경 (실무협의체 위원장)	○ 위원들 중 새로운 사업의 의견이 있을 경우 반영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임.
박창재 (사무국장)	○ 사실 전년도 8월부터 시작되어 의회 통과까지 온 상황으로 변화가 어렵지만 반듯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담당부서와 논의하여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임.
김상길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 국내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제안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것임. 나와 같이 타시군의 상황을 잘 모르는 위원들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어떠할지 제안했던 것임.
박창재 (사무국장)	○ 위와 관련된 사안은 담당부서와 검토하여 차기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보고하겠음

③ 2018년도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선정

○ 회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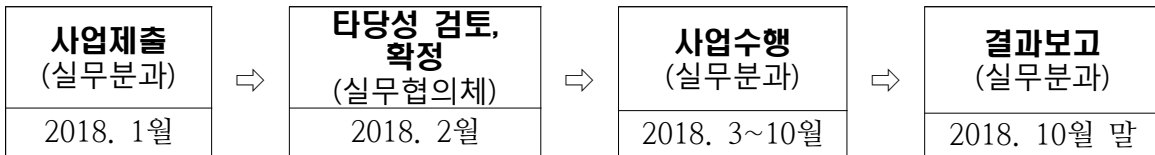
• 2018년 추진방향

-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제안을 위한 근거 및 토대 마련
- 12개 실무분과에 분배 통해 모든 실무분과에서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논의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 및 정책간담회,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
- 지역의 현안 욕구 및 문제를 발굴·연구하여 정책 과제로 제안하는 사업
- 단일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적 욕구 및 업무 추진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합 사업

• 추진절차



• 추진일정

- 실무분과별 운영 방향 및 사업 논의 : 2018. 1월
-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계획 취합 : 2018. 2. 7.(수)
- 공동사업 확정(실무협의체 회의) : 2018. 2. 19.(월)
- 사업 추진 : 2018. 3월 ~ 9월 ※집중 추진기간 : 3 ~ 6월 중
- 결과보고서 제출 : 2018. 10월 말까지

○ 논의내용 :

이 름	내 용
황재경 (실무협의체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젠다 중심으로 교육하고 평가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자리, 시민건강분과들도 보장계획 별도로 아젠다 관련 활동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해 낼것인지. 시민복지라는 의미에서 시의 커다란 아젠다화 해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계획을 보면 각 영역별로 조사, 교육 등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공유하고 나눌 것인지 함께 모여서 통합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인지 실무협의체에서 고민해 낼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

④ 운영세칙 개정(안)_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감사 선임 관련

○ 회의결과 : 2안으로 의결

○ 주요내용

• 개정배경

- 2017년도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서, 감사 담당자가 없는 기관의 경우 일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

• 개정방안

- 1안 : 제3장 제10조(조직구성)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조직구성) (중간생략) ③ 조직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조직구성) (중간생략) ③ <u>협의체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외부감사를 둘 수 있다.</u> ④ 조직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 2안 : 제3장 제18조(사업계획 및 예·결산)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제18조(사업계획 및 예·결산) (중간생략) ③ 예산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에 대하여 대표협의체 및 수원시에 결산 보고한다. ④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결산) (중간생략) ③ 예산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u>집행내용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결산과 더불어 대표협의체 및 수원시에 보고한다.</u> ④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논의내용 :

이름	내용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법적 해석을 받은 부분인가. 반듯이 외부 회계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담당부서 과장을 감사로 임명하여 하는 방안이 어떠한가. 실제로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별도 예산을 주어 한다고 한들 크게 의미가 없을 듯 함.

이름	내용
박창재 (사무국장)	○ 전국 226 지자체 협의체 중 수원만 유일하게 경영평가를 받고 있음. 산하기관으로 분류하여 받고 있는데 일반 출자출연기관으로 인지하여 이러한 권고사항이 발생한 듯 함.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외부회계감사까지 고려했던 부분인데 위의 오민수 위원이 좋은 제안을 주었음. 3안으로 제안한 상황임.
황재경 (실무협의체 위원장)	○ 우리 담당부서 과장이 외부 감사로 가능한가
김수정 (복지허브화추진단 복지자원관리팀장)	○ 담당부서 과장은 대표협의체 간사라 외부가 아님
이영설 (작은행동 한사랑 시설장)	○ 같은 의견으로 외부 감사가 될 수 없음
김인배 (예산재정과 예산팀장)	○ 1,2안의 차이점이 있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별표 1은 조직에 대한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고, 담당부서 과장이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음. 성격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감사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신이 서지 않음. 사무국의 조직구성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2안이 보다 맞지 않을까 생각함.
조여옥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 센터장)	○ 보조금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외부출연기관과는 다르게 굳이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듦. 변경하지 않는 변경전 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박창재 (사무국장)	○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지자체에 결산과 함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렇게 봤을 때는 2안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듦.
황재경 (실무협의체 위원장)	○ 굳이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원점으로 가서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2안에 대한 의견이 조금더 많은 상황으로 보임. 최종 결정 방법에 대해 의견을 달라
김상길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 거수로 하자
송명은 (한국방문간호사회 대표)	○ 외부감사를 둔다는 것은 그 동안 내부 감사가 있었나? / 없었음. / 그렇다면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좋을 듯 함.
박창재 (사무국장)	○ 외부감사의 경우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추경이 필요한 상황임.
황의숙 (수원시가족여성회관 관장)	○ 보조금에 대한 정산부분이 있는데 기간단위가 어떻게 되나
박창재 (사무국장)	○ 운영비는 분기별, 사업비는 월별로 하고 있었는데 예산부서와 조정하여 분기보고로 조정하였음.
황의숙 (수원시가족여성회관 관장)	○ 지도점검을 받거나 행정감사를 받을때도 회계가 들어가는데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음. 1년단위로 받는다면 2안으로 제안함.
황재경 (실무협의체 위원장)	○ 이견이 없을 경우 2안으로 결정하겠음. 이견없는 상황으로 2안으로 정리하여 대표협의체에 올리겠음.

[참고자료 1] 관련사진

2018년 제1차 실무협의체회의(2018.2.19.)

